질병관리청

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<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안내>

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,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(12월)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주요내용】

○ 우리 청에서는 **국내 코로나-19 예방접종완료자**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등을 적용(5.5~)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**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***하고 있으며, **12월**에는 아래와 같이 대상국가를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,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

○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인됨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

***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: 15개국**

미얀마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파키스탄, 필리핀 (+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)

※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매월 공지 예정

【적용기간】

○ '21. 12. 1. ~ 21. 12. 31. 입국자

【참고사항】

○ 단,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**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** (단, 오미크론 관련 국가(8개국)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제한 및 입국불허, 경유포함)